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은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5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6.

발의의원 : 양은숙 의원,

김보경 의원, 이연숙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, 긴급복지지원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 지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방세정 지원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세사기피해자 범위(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) 확대(안 제2조)
- 나. 지원사업에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, 긴급복지지원 신설(안 제4조제1항)
- 다.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의 차액 지급 또는 비지급 명시(안 제4조제2항)

## 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- 4. 관계법령 :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,  
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전세사기피해자의”를 “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“전세사기피해자등”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전세사기피해자에”를 “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

라.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액에서 이 유사한 지원액을 제한 차액의 전부 또는

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사업 적용례)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결정된 <u>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--- ----- <u>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6. (생략)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2. “전세사기피해자등”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인을 말한다.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조(주택임차인보호 및 지원사업)</b>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다음</u></p>	<p><b>제4조(주택임차인보호 및 지원사업)</b></p> <p>① ----- -- <u>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</u>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</u></p>

각 목의 사업

가.·나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3. (생략)

<신설>

자등에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

라.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

3. (현행과 같음)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액에서 이 유사한 지원액을 제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(법률)」(2024.9.10. 일부개정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전세사기피해자”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.

4. “전세사기피해자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전세사기피해자

나. 제3조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

다.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(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)을 인도(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)받았으며,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(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

제28조(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) ① 전세사기피해자,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(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)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·기간·종류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다.

## □ 「긴급복지지원법(법률)」(2023.6.13. 일부개정, 2023.12.14. 시행)

제5조(긴급지원대상자)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(이하 “긴급지원대상자”라 한다)

으로 한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(법률)」(2023.12.29. 일부개정, 2024.7.1. 시행)

제26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, 사변(事變), 화재(火災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·신청·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·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, 질병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